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4조【특약의 보장개시】
제5조【특약내용의 변경】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7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8조【효력 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4관 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5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일
제10조【기준통화】
제11조【적용환율】
제12조【환산기준일의 적용】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3조【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제15조【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원화환산 지급 서비스 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이 부과되는 주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되는 기본 통화는 미(美)합중국통화 (이하 “미화”라 하며, 그 단위는 “달러”라 합니다)이며,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미화로 보험금 등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특약을 통해 보험금 등의 지급을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하며, 그 단위는 “원”이라 합니다)로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주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환산기준 관련 용어
   가. 지급기준환율 :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주거래은행”이라 합니다)이 해당 일에 최초 고시하는 송금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일에 **최초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율)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로서 회사가 보험금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고시환율 예시]

주거래 은행 고시환율						특약적용환율
고시환율	매매 기준율	현찰		송금(전신환)		지급 기준환율
		살 때	팔 때	보낼 때 (전신환매도)	받을 때 (전신환매입)	
미국 USD	1,150.50	1,170.63	1,130.37	1,161.70	1,139.30	1,139.30~ 1,150.50

※전신환 매입율(TT Buying rate): 외국 혹은 외부로부터 전신으로 취결되어 온 타발 송금환을 은행이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통상 고객입장에서 전신환 송금환율(받을 때)로 표기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환산기준일 : 계약의 보험금 등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되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주계약의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5조【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합니다.

제3관 보험료의 납입

제7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8조【효력 상실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4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관 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주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특약에 대해서도 동시에 해지되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제5관 기준통화 및 환산기준일

제10조【기준통화】

주계약의 기준통화는 "미화"로서 보험금 등의 지급이 "미화"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자가 원할 경우 이 특약을 통해 보험금 등의 지급을 "원화"로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적용환율】

보험금 등의 지급은 접수 시점에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원화' 또는 '미화'로 지급되며 '원화'로 지급을 원할 경우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금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제12조【환산기준일의 적용】

지급형태에 따른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의 지급형태는 모두 당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특약명	지급형태	환산기준일
원화환산 지급서비스특약	기납입보험료 반환 (품질보증해지, 계약취소 등)	지급당일
	중도인출	접수일+제2영업일
	해지환급금	접수일+제2영업일
	감액	접수일+제2영업일
	사망보험금	접수일+제2영업일

단, 본 조에서 당일의 환산기준일을 적용하는 경우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니라면 직전 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예시]

1월 2일(영업일),1월 3일(영업일),1월 4일(공휴일),1월 5일(영업일),1월 6일(영업일)

1. 해지환급금 $1,000을 1월 2일에 접수할 경우,
(1월 5일 지급기준환율은 $1 = ₩1,150)
=> 1월 4일이 공휴일이므로 1월 5일이 환산기준일이 됨.
따라서 $1,000 x ₩1,150 = ₩1,150,000이 해지환급금이 됨
2. 사망보험금이 $100,000을 1월 3일에 접수할 경우,
(1월 6일 지급기준환율은 $1 = ₩1,140)
=> 1월 4일이 공휴일이므로 1월 6일이 환산기준일이 됨.
따라서 $100,000 x ₩1,140 = ₩114,000,000이 사망보험금이 됨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3조【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회사가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계약에 대해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보험금 등을 취소하는 경우 고객은 지급받은 원화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5조【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 특약의 원화환산지급서비스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